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39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강명구 · 구자근 · 이종배
엄태영 · 김용태 · 성일종
조은희 · 김정재 · 서천호
정동만 · 임종득 · 이성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함으로써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호 단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 단서 중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정류장에서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u>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4. ----- ----- ----- -----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u><신 설></u>	<u>가.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u>

<u><신 설></u> 5. ~ 8. (생 략)	<u>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u> <u>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가 정류장에서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u> 5. ~ 8. (현행과 같음)
--	---